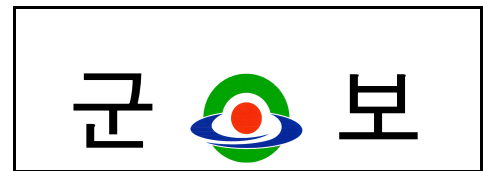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41호 2019. 1. 7.(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고시(예천군 고시 제2019-1호)
-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예천군 고시 제2019-2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예천군 고시 제2019-6호)

입법예고

-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30호)
-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32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이 정비 완료되어 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 01월 07일

예 천 군 수

1.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내용

시설명칭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정현황	
구분	명칭				시작지점	끝나는지점	연장(m)	폭(m)
세천	갈밭세천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	475	465-2	960	4
소교량	새마소교량	예천군	감천면	유리	542	542	4	3
마을 진입로	매화촌마을 진입로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547-1	90	1,000	3

2.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 예천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의함

3.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기관 : 예천군 예천군수

4.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일 : 2019년 01월 07일

5. 문의처 : 예천군 안전재난과(☎054-650-6332)

도로 노선의 [○] 지정
[] 변경
[] 폐지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9 - 2호

도로법 [○]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 지정
[] 변경
[] 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 년 1 월 7 일

예천군수



구 분		[○] 지정 [] 기존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군도	
노선번호		24호선	
노선명		예천 ~ 호명	
기점		예천읍 청북리 688-14	
종점		호명면 월포리 540-1	
주요 통과지		진호국제양공장	
총연장(킬로미터)		5.72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연장 (킬로미터)	-	

작성방법

1. 지정국도는 기존 일반국도 노선번호에 "-중 지정국도"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예시: 일반국도 제1호 중 지정국도)
2. 기점·종점은 행정구역을 읍·면·동 및 지번까지 적고, 주요 통과지 및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은 읍·면·동까지 적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및 변경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 7.

예 천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8 외 15건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 사유	도로명주소 부 여 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54-650-69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7일

예 천 군 수

1. 제정 이유

- 예천군에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천군수가 발행하는 예천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천사랑상품권 정의(안 제2조)

-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유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

나.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안 제3조)

-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
- 발행 시 전문 업체와 인쇄계약 체결(카드,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 가능)
- 상품권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 관내 금융기관 대행 가능

- 상품권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 가맹점으로 구성된 단체 대행 가능

다.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안 제4조)

- 상품권의 종류, 종류별 권면금액, 디자인은 군수가 정함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라.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안 제5조)

- 군에 있는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가능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상품권 사용 부적합 업종이나 업소에서 사용제한

마. 환전(안 제11조)

- 가맹점이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판매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의뢰
- 판매대행점은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
- 가맹점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 명절이 속한 달 및 다음달에는 6천만원까지 가능

바. 할인 및 수수료(안 제12조)

- 상품권 권면 금액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판매가능
- 할인구매 연간 400만원 초과 불가, 법인 및 가맹점 할인구매 미적용 가능
-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범위에서 정함
- 판매대행단체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 5 범위에서 정함

사. 상품권 활성화 시책(안 제13조)

-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 시행 가능, 예산 범위 내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인센티브 지급 가능
- 군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점수,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 상품권 지급 가능
-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상품권 교부 가능

아. 부정유통 신고포상제(안 제16조)

- 상품권 부정유통의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되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 초과 불가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새마을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 보내실 곳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새마을경제과)
 - 전 화 : 054-650-6854
 - 팩 스 : 054-650-609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조례명 :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천군수가 발행하는 예천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이를 소유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 제9조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 제2조의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판매대행단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 가맹점, 사용자에게 대한 보상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의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천군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이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 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와 종류별 권면 금액, 디자인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판매된 상품권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군(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위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 시설, 체육시설 등

②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상품권 사용대상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거나 가맹점 지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 ②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 ③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3. 가맹점이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조·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행사에는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에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 ⑤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판매·회수·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③ 판매대행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지켜 사용자가 불편 없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판매대행단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 시장 지원업무,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③ 판매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판매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추석 명절이 속한 달 및 다음달에는 6천만원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 될 때는 연간 2회의 범위에서 재고 상품권의 50퍼센트 까지 환전 처리 할 수 있다.

- 제12조(할인 및 수수료)**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가매는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가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판매대행단체에 지급하는 환전 수수료는 1000분의 5범위에서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지급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상품권 활성화시책)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점수,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6조제4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이나 제18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

제18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이 제7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2. 판매대행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3. 사용자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상품권 제작비, 할인보전,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세입	○ 할인액보전	0	75	120	120	120	435
	소계(a)	0	75	120	120	120	435
세출	○ 상품권제작	30	53	90	90	90	353
	○ 할인액보전	150	250	400	400	400	1,600
	○ 수수료	35	58	92	92	92	369
	○ 기타운영비	65	65	76	76	76	358
	소계(b)	280	426	658	658	658	2,680
□ 총 비용(a-b)		-280	-351	-538	-538	-538	-2,24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국비		0	0	0	0	0	0
도비		0	75	120	120	120	435
시·군비		280	351	538	538	538	2,245
합계		280	426	658	658	658	2,680

- 2020~2023년 :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사업 신청(경상북도)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새마을경제과 지방행정서기 이지수(☎ 054-650-685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상품권 제작 : 1매 당 150원

○ 2019년도 20만매, 2020년도 35만매, 2021~2023년도 60만매 제작

2. 할인액 보전 :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 할인

○ 2019년도 150백만원, 2020년도 250백만원, 2021~2023년도 400백만원

3. 수수료 : 판매 및 환전액의 1000분의 23 범위 내 정함

○ 2019년도 35백만원, 2020년도 58백만원, 2021~2023년도 92백만원

4. 기타운영비 : 상품권 홍보, 전산시스템 구축·사용료 및 기타경비

○ 상품권홍보비 : 15백만원

○ 전산시스템 구축·사용료 : 30백만원

○ 기타경비 : 29 ~ 55백만원

- 상품권활성화 시책추진비, 상품권 인센티브, 가맹점 모집 인건비,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가맹점스티커 및 상품권 봉투제작 등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 제2호·제4호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내수면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3.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제17호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를 말한다.
4.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5.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동유대"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4. "조합원"이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5. "불법·부실대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대출·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 및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제42조를 위반하여 한 대출등

나. 대출등 및 가지급금 중 그 회수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하 "부실대출"이라 한다)

6. "표준정관"이란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정관을 말한다.
7. "표준규정"이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8. "지역조합"이란 동일한 행정구역·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을 말한다.
9. "자기자본"이란 자본금, 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9조(명칭의 사용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無盡會社), 서민금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새마을금고법】

제2조(정의와 명칭) 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역금고"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말한다.

④ 금고나 중앙회는 그 명칭 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금고나 중앙회가 아니면 제4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7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천사랑상품권의 종류(안 제2조)

- 상품권의 종류는 2종이며 권면금액은 5천원, 1만원으로 함

나. 상품권의 사용제한(안 제3조)

-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 규정
 -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 예천을 본사로 두지 않는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업소)

다. 환전(안 제9조)

- 환전기한은 환전청구 후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로 함
- 라. 할인가매(안 제11조)
- 할인가매 연간 400만원 초과 불가하며 월간 한도를 정할 수 있음

3. 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새마을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 보내실 곳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새마을경제과)
 - 전 화 : 054-650-6854
 - 팩 스 : 054-650-609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조 례 명 :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품권의 종류)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종류를 2종으로 하며, 권면금액은 5천원, 1만원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예천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8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예천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전한도를 초과하여 환전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신청한다.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조·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참관하여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할인가매 한도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 구매는 연간 400만원의 범위에서 월간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 법인의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③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는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예천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예천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예천군과 예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오천원(5,000원)권, 일만원(10,000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예천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인 “OOOOO”에 보관하며, “OOOOO”에서 읍·면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② 매월 말 총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현황을 정산하고,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 환전현황을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과 읍·면별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단체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분의 ××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총괄 판매대행점과 읍·면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참관하여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예천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예천군과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성명 예천군수 (인)

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인)

상품권 판매대행단체

주소

성명 (인)

예천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예천사랑상품권 ××단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권면금액	발행수량	발행금액	비고
계	×××만장	×××억원	
5천원권	×××만장	×××억원	
1만원권	×××만장	×××억원	

2. 예천사랑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 예천군, 한국조폐공사, ××××(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단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5천원권 ×××만장, 1만원권 ×××만장을 20××.××.××. ××××(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 인계인수 및 확인자

- 한국조폐공사 : 직 성명 (서명)

- ××××(금융기관) : 직 성명 (서명)

- 예 천 군 :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예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년 월분)

권 중	인 수		판 매		환 전		재 고	
	일련번호	매 수	일련번호	매 수	일련번호	매 수	일련번호	매 수
계								
5천원권								
1만원권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예 천 군 수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업 종 및 취 급 품 목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폰 :)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지정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 style="width: 20%;">구비서류</td> <td>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td> </tr> </table>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예천군이 발행하는 예천사랑상품권을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예천군과 가맹점 간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지정·변경·해지) ① 예천군에 있는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지정 취소) 예천군수는 가맹점이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예천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예천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나 제5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예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조·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 ④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중 100분의 70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히행 및 업무협조) ① 예천군수와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예천군수와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예천군수와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예천군

가맹점

상 호 :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주 소 :

대표자 : 예천군수 (인)

대표자 :

[별지 제6호 서식]

예천 - 호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 상 호 :

○ 소 재 지 :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별지 제7호 서식]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예천 - 호)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휴대폰 :)	
	주 소			
신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별지 제8호 서식]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예천 - 호)				
신 청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상 호		전화번호 :	
			(휴대폰 :	)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해지 사유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가맹점 지정서 원본			

예천사랑상품권 이용규약

제1조(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예천군과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예천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예천군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예천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의 7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직접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예천사랑상품권이 처음 발행된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예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천원)	
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위와 같이 예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예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					
예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천원)	
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환전한도 초과신청서			
(가맹점 번호 : 예천 - 호)			
☐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		사 업 형 태	사업자(☐ 개인, ☐ 법인) ☐ 개인(노점)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폰 :)	
사 업 소 소재지			
주 소			
☐ 한도 초과 요청			
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3,000만원)			만원
월평균 매출액(*소득금액 증빙 가능한 최근 3개월)			만원
☐ 한도 초과 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가맹점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예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의사항	1.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예천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권면금액	매 수	폐기방법	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예천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예천군수 귀하

예천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개인)

구매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구매금액
			원

본인은 위와 같이 예천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를 신청하며, 예천사랑 상품권 현금할인구매(할인율 10%이내, 연간 400만원 한도(전 금융기관 합산))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할인구매자 _____ (서명)

〈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1. 개인정보는 예천사랑 상품권 현금구매고객 할인(10%이내) 한도관리(연간 400만원)를 위해 수집되며, 할인 없이 구매 하실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수집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2.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이며 구매 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현금구매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예천사랑상품권 현금구매고객 할인 한도관리를 취급하는 타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천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매 금 액	구 매 목 적
		원	

위와 같이 예천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할인구매자 _____ (서명)

〈구비서류〉

- ◇ 법인 대표자 구매 시 : 사업자 등록증, 법인 대표자 신분증
- ◇ 대리인 구매 시 : 사업자 등록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1. 예천사랑상품권은 예천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무기명 유가증권의 일종이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건전한 소비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발행·유통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품권 발행 취지에 어긋나는 대금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 또는 재할인(속칭 상품권 “깡”)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라며, 예천사랑상품권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는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예천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예천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 매/천원)

권면금액	발 행 내 역		관 매 내 역		보 유 내 역	
	매 수	발행액	매 수	판매액	매 수	보유액
계						
5천원권						
1만원권						

2. 예천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원)

환전액	미환전액	이자발생액	통장잔액	비 고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천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예천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	발행번호		발행매수	발행금액	보관 장소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5천원권							
	1만원권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